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919
----------	------

2020년 12월 17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10월 15일, 홍성룡 의원 외 11명

2.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6일

3. 상정일자

○ 제298회 정례회 중 제7차 교육위원회

(2020년 12월 17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성룡 의원)

1. 제안이유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
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관련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0년 10월 15일 홍성룡 의원 등 12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919호로 공동 발의되어 2020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약칭: 반민족규명법)」은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를 선정·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는 특별법으로,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친일 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이며 “친일을 청산하고, 독립운동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 대다수가 ‘친일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

습니다.¹⁾

-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친일잔재 청산과 관련하여 ‘별로 청산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49.3%, ‘전혀 청산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0.8%로,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정치인·고위공무원·재벌 등에 친일파 후손들이 많아서(48.3%)’, ‘친일파 명부재산 환수 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27.8%)’ 등을 꼽았습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국민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상반된 조사 결과’, ‘친일파 후손의 재산 논란’, ‘친일기업 오명 논란’ 등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²⁾

- 이에 동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실태조사, 사업 추진,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구성체계

- 동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1) 보도자료: 「문재인 대통령 “친일청산이 정의로운 나라로 가는 출발”」 (한국경제, 2019.2.26.)

2) ‘6·25 영웅’ vs ‘친일’ 고 백선엽 장군은 누구 (한국일보, 2020.7.11.)

친일파 후손이 매입한 남이섬 ‘친일재산’은 아닌 이유 (서울신문, 2019.7.6.)

삼양그룹, 전범 미쓰비시와 끈끈한 관계... 견히지 않은 ‘친일 그림자’(투데이신문, 2019.1.3.)

안 제7조는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 면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실무」 등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히 동 조례안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홍보 사업 등을 추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바,

이는 교육 현장에 남아있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도 동 조례안의 제정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6017, 2020.11.10.).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차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얻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일반민족행위”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이란 제1호에 따른 행위의 조사·연구와 홍보 등을 통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 및 통치에 협력·동조했던 행위를 반성하며 이를 교훈 삼아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 등을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 ① 교육감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2.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3. 그 밖에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교육감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의 수립
 2.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사업에 관한 평가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청,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